

1. 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4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해수부장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조치사항을 반기마다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나.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4조)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자원 조사 및 통계자료, 해양치유 지구에 관한 정보,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현황,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해양치유관리단 수행 사업(안 제13조)

법률에 규정된 해양치유관리단 업무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지역계획의 평가,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 관련 정책 홍보 및 국제협력 등 추가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사업을 정함

마.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안 제16조, 안 제17조)

구성·내용의 적절성,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안전성 확보, 평가방안 마련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인증의 표시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조치사항을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와 제2항의 조치사항의 이행을 종합하여 다음해 시행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및 대상 지역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인원

4.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통계자료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 위치 등에 관한 정보

3.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운영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해양치유지구 지정제안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이하 "해양치유지구의 변경"도 또한 같다)을 제안하려는 시·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해도를 포함한다)
3. 해양치유지구 내 해양치유자원의 종류 및 분포
4.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유권, 어업권, 점용·사용권 등 권리 현황
5.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 가.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해양치유지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제안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서
2. 해양치유지구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소유권, 사용·수익권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양치유지구 조성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조성예정지역이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해도)
5.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개요서
6. 법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치유지구의 규모, 해양치유시설의 배치, 해양환경 보호 및 그 밖의 조성계획의 내용이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출서류)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나.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실시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4.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6. 매수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가 표시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7. 매수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 도면

제10조(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계획과의 연계성
2. 그 밖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지원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 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14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담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 또는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3.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

4. 해양치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제14조(인증대상 해양치유 프로그램)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란 해양치유자원과 시설을 활용한 건강증진, 여

가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①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한 때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①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적절할 것
2.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할 것
3.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평가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세부 인증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표시하거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표시(제17조제1항 관련)

1. 인증표시



인증번호 제 호
해 양 수 산 부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표시방법

- 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인 '우수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 나. 인증표시 아래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한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와 인증이 만료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해양치유지구 ([]지정 []변경)제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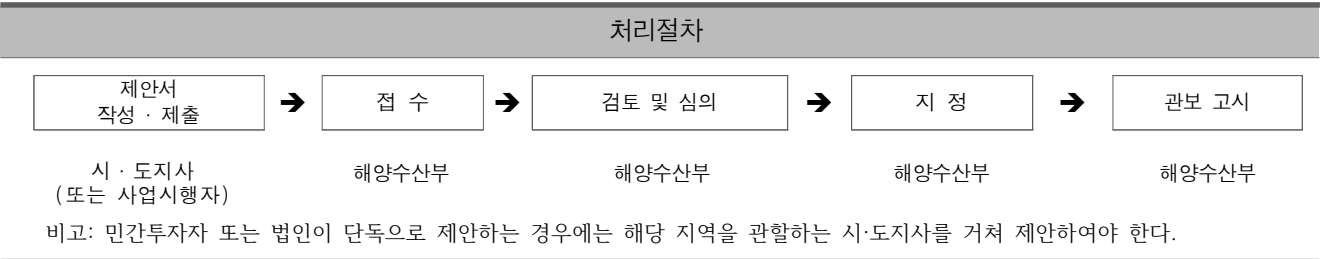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제안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역	지구명		
	지정목적		
	위치		
	면적		
변경사항	변경내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변경을 제안합니다.

제안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해양치유지구 제안서 1. 해양치유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3. 해양치유지구 내의 해양치유자원의 종류 및 분포 4.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유권, 어업권, 점용·사용권 등 권리 현황 5. 해양치유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가.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해양치유지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 변경제안서 1.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 도면	수수료 없음
------	--	-----------



해양치유지구 [] 조성계획 []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해양치유지구	지구명		
	지정목적		
	위치		
	면적		
변경사항	변경내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의 []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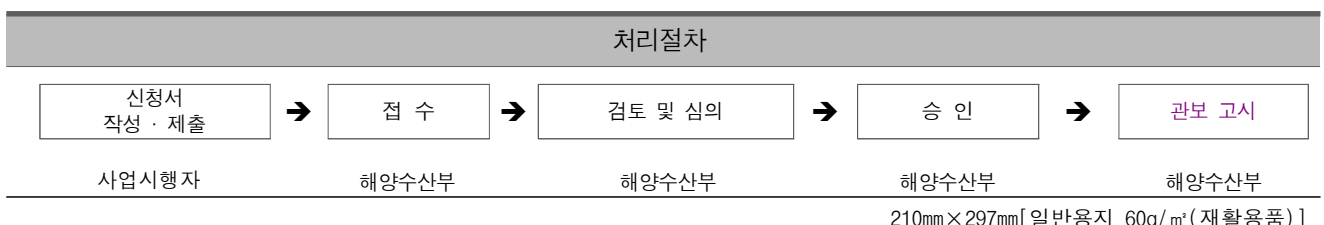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의 경우 가.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서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소유권, 사용·수익권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양치유지구 조성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조성예정지역이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해도) 마.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개요서 바. 법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2.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변경 승인의 경우 가.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관계 도면 다. 법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변경 내용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	---	---------------



해양치유지구 [] 조성계획 [] 조성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해양치유지구	지구명		
	지정목적		
	위치		
	면적		
변경사항	변경내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의 []조성계획 []조성계획변경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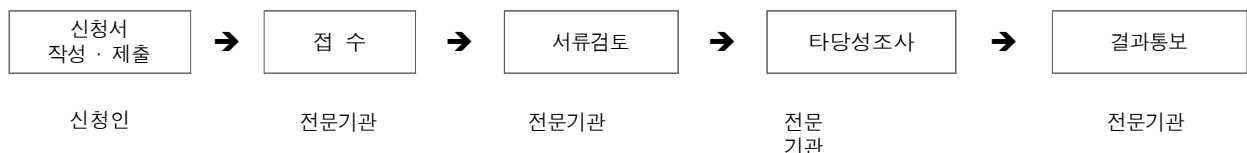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의 경우 가.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서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소유권, 사용·수익권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양치유지구 조성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조성 예정지역이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해도) 마. 해양치유시설의 조성 개요서 바.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세부기준의 조사결과서 2.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신청의 경우 가.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관계 도면	수수료 「해양치유자원 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해양치유지구 [] 실시계획
[]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목적		
	시행방법	사업기간	
변경사항	변경내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의 [] 실시계획 []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가.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서 나.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다.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라.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마.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바. 매수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가 표시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사. 매수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아.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자.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2.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의 경우 가. 해양치유지구 변경실시계획서 나.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관계 도면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검 토	→	승 인	→	관보 고시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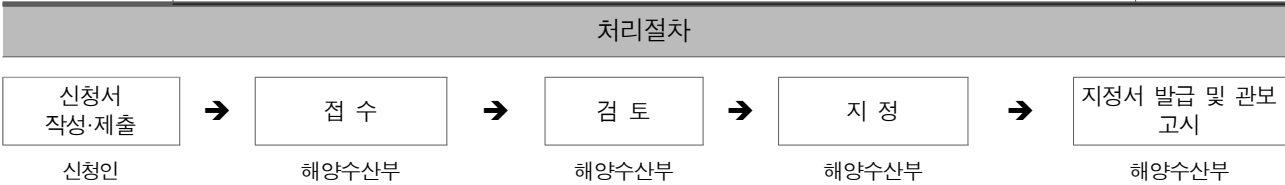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14조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4. 영 제20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해양치유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 음
------	---	----------------



제 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해양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활용 해양치유자원		
	프로그램 내용		
	보급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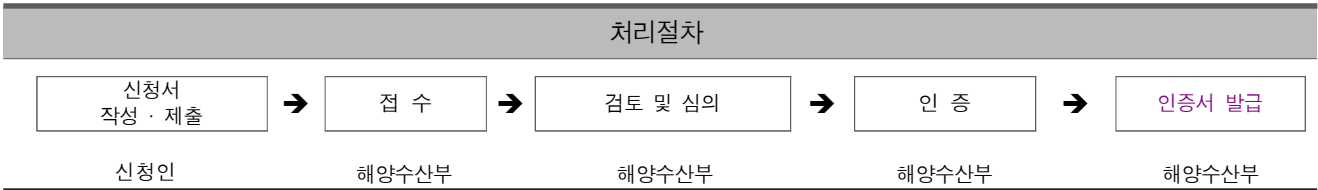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요 및 세부 설명서 2.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시설 및 장비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3.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해양치유자원 및 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4. 해양치유 프로그램 이용자의 안전관리 계획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 평가계획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인 증 번 호	제 호		
프 로 그 램 명 칭			
인 증 기 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유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직인

유의사항

- 1.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됩니다.
- 2.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3.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5.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간 유효합니다.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양치유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									
번호	구분 (인증 분야)	유효기간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사무소 소재지)	인증서 발급		변경	
						날짜	수령인	변경 내용	변경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

접수일	지정번호	발급일	신청인			주소(사무소 소재지)
			기관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